



질병관리청

# 질병관리청



질병관리청 콜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

## 1. 관련

- 가. 의료법 제37조(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)제3항 및 제4항, 제92조(과태료)
- 나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(보건복지부령 제802호)
- 다.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(질병관리청고시 제2021-5호)

2. '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(선임교육 및 보수교육)'을 [붙임]과 같이 실시하오니, 귀 협회회원 등 의료기관 교육대상자가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교육안내문\_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. 끝.

## 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영상의학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영상치의학회, 대한방사선사협회, 대한치과위생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개원의협의회,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

기술공무직	김현지	보건연구사	장재욱	의료방사선과장	전결 2022. 12. 22.
				이병영	

협조자

시행 의료방사선과-3767 (2022. 12. 22.) 접수

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방사선과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516 팩스번호 043-719-7519 / [pinkjoa@korea.kr](mailto:pinkjoa@korea.kr) / 대국민 공개